

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투고지침

1. 논문 체제의 구성

- 1) 표지: 논문제목(영문제목 병기), 필자의 인적사항(성명, 영문 성명, 소속, 직책)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. 이 때 소속 및 직책은 현직만을 기재하되 학위는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초록에만 기재할 수 있다.
- 2) 논문초록(국문 및 외국어) 및 검색어(국문 및 외국어): 논문에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. 단 번역문에는 국문 및 외국어 초록 대신 역자 해제를 붙여야 하고 박사학위논문 초록에는 별도의 초록을 붙이지 않는다. 검색어는 5개 내외로 한다.
*영문 초록에도 영문 제목, 영문명, 영문 키워드를 표기한다.
- 3) 본문: 장, 절의 표시는 I, 1, (1), 1), 가, (가), 가)의 순서로 표기한다.
- 4) 각주: 이하의 세부 작성요령 참조
- 5) 참고문헌: 이하의 세부 작성요령 참조.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국내문헌, 외국문헌 순으로 하고 각 문헌마다 저서, 논문 순으로 나누어 표기하되 국문은 숫자 - 가나다순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한자문화권은 발음의 가나다순, 비한자문화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.

2. 세부 작성요령

- 1) 본문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.
 - ① 서적은 『 』, 논문 및 문장인용은 “ ”, 법령은 「 」, 용어 및 강조는 ‘ ’로 표기한다.
 - ② 영문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.
 - 최초의 경우 : 한스 켈젠(Hans Kelsen), 『법철학』(Rechtsphilosophie), 개념(concept)
 - 두번째 이후 : 한스 켈젠, 『법철학』, 개념
- 2)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.

[국내문헌]

 - ① 저서 : 이재상, 『형법총론』(박영사, 1998), 41면.
이재상, 앞의 책(주 9), 98면.
이재상·강동범·정현미, 『형법학』(신조사, 2006), 5면.
이재상·강동범·정현미, 『형법학』(신조사, 2006), 5면.6면.
이재상·강동범·정현미, 『형법학』(신조사, 2006), 5-18면.
 - ② 국내편집저서 : 편집대표 곽윤직, 『민법주해』(박영사, 1992), 200면(홍길동 집필부분)
편집대표 곽윤직, 앞의 책(주 19), 200면(홍길동 집필부분).
 - ③ 번역저서 : 캐런 메싱, 정진주 외 역, 『보이지 않는 고통』(도서출판 동녘, 2017), 23면.
캐런 메싱, 정진주 외 역, 앞의 책(주 20), 23면.

캐런 메싱, 정진주 외 역, 앞의 책(주 20), 23면.24면.

④ 논문 : 김문현, “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”, 『법학논집』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5), 제10권 제1호, 19면.
김문현, 앞의 논문(주 10), 24면.

④-1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: 엄경천, “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”, 김상훈 편집, 『2017년 가족법주요판례 10선』(세창출판사, 2018), 10면.

⑤ 자료집 : 이수정, “경찰에서의 소년범 다이버전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절차”, 『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』(2004).

미래창조과학부, “사물인터넷 기본계획 확정”, 『장애인자립활동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』(2011).

미래창조과학부, 앞의 자료집(주 19), 89면.

*행정부처 등이 주최한 조사인 경우 저자로 취급하고 작성합니다.

⑥ 보도자료 : 미래창조과학부, “사물인터넷 기본계획 확정”, 2014년 5월 8일자 보도자료.

미래창조과학부, “사물인터넷 기본계획 확정”, 2014년 5월 8일자 보도자료.

<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97012> (최종방문일 2017. 11. 30.).

*행정부처 등의 보도자료의 인용방법입니다.

**인터넷자료인 경우, 보도자료 인용방식 작성 후, 줄바꿈을 하고 인터넷자료 인용방식을 첨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단, 링크는 검색사이트의 주소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 링크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*최종방문일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최종방문일을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논문 투고 날짜로 일괄 통일하겠습니다.

⑦ 일간지 : “법학논집에 관하여”, 『동아일보』, 1972년 10월 18일자.

: “신생아가 산재보험 청구하라는 법원”, 『여성신문』, 2016년 8월 26일자.

<http://www.womennews.co.kr/news/97012> (최종방문일 2017. 11. 30.).

“신생아가 산재보험 청구하라는 법원”, 앞의 기사(주 19).

*인터넷기사인 경우, 일간지 인용방식 작성 후, 줄바꿈을 하고 인터넷자료 인용방식을 첨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단, 링크는 검색사이트의 주소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 링크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⑧ 법률안 : 43096, 투고지침의 수정사항 제안, 김의영의원 외 5인, 2018. 4. 30.

투고지침의 수정사항 제안, 앞의 의안(주 21).

⑨ 공적 보고서 : 헌법개정자문위원회, “헌법개정안”, 대한민국 국회 (2014. 5.), 24.

[외국문헌]

① 서적 : Volume No. (if any) NAME OF AUTHOR, TITLE OF THE BOOK pg. cited (edition cited year).

2 FREDERICK POLLOCK & FREDERIC WILLIAM MAITLAND, THE HISTORY OF ENGLISH LAW 205-06 (2d ed. 1911).

② 편집외국저서 : Volume No. (if any) NAME OF AUTHOR, TITLE OF THE BOOK pg. cited (Editors/Translators Name, edition cited year) (Year).

CHARLES DICKENS, BLEAK HOUSE 49-55 (Norman Page ed., Penguin Books 1971) (1853).

③ 논문 : Name of Author, *Title of Article*, Journal volume no. ABBREVIATION OF JOURNAL Page on which Article Begins, Page Cited (Year).

Charles A. Reich, *The New Property*, 73 YALE L.J. 733, 737-38 (1964).

*앞/뒤에 기재된 논문을 재인용하시는 경우, 라틴어가 아닌 한글로 “앞/뒤의 논문”이라고 표기 부탁드립니다 (예: Charles A. Reich, 앞의 논문(주 19), 737면.).

**학회지 내 시작 페이지 및 인용 페이지 둘 다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*Section은 §로, paragraph는 ¶로 표기 부탁드립니다. 복수인 경우에는 §§, ¶¶로 표기 부탁드립니다(예: §§ 4801-4852).

④ 일간지 : Author's name, *Name of Article/ news report*, ABBRV. OF NAME OF NEWSPAPER, Month Date, Year, at pg. no.

Ari L. Goldman, *O'Connor Warns Politicians Risk Excommunication over Abortion*, N.Y. TIMES, June 15, 1990, at A1.

⑤ 전자자료 : Eric Posner, More on Section 7 of the Torture Convention, THE VOLOKH CONSPIRACY (Jan. 29, 2009, 10:04 AM),

<http://www.volokh.com/posts/1233241458.html> (최종방문일 2021. 3. 7.).

*외국 사이트 최종방문일도 한글로 표기 부탁드립니다.

⑥ 인터넷 기사 : Emma Calder, *Commercial UAV crash due to drastic weather changes, investigation finds*, COMMERCIAL DRONE

PROFESSIONAL, Jan. 18, 2018.

<https://www.commercialdroneprofessional.com/commercial-ua-v-crash-duedrastric-weather-changes-investigation-finds/>

(최종방문일 2021. 3. 1.).

*BLUEBOOK(19th ed.)의 인용방법을 기초로 합니다.

⑦ 기타 외국문헌은 “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(증보판)”(사법정책연구원, 2017)의 방식을 따른다.

[조문]

① 「헌법」 제32조

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

② 외국의 조문 인용 시 (예: 「독일민법」)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.

[판례]

①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도629 판결.

헌법재판소 2003. 11. 27. 선고 2002헌바102 결정.

② 외국의 판결은 “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(증보판)”(사법정책연구원, 2017)의 방식을 따른다.

[전자자료]

<http://home.ewha.ac.kr/~elsi> (최종방문일 2009. 2. 20.).

*접속이 가능한 유효한 링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3) 표와 그림은 <표 1>, <그림 1>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,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4) 저자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① 필자의 인적사항(성명, 영문 성명, 소속, 직책)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. 이 때 소속 및 직책은 현직만을 기재한다.

원칙적으로 박사과정 학위논문인 경우에 한해서만 박사과정 수료 여부를 초록에 기재한다.

*학위논문이 아닌 일반 연구논문의 경우, 별도의 소속(예: 변호사, 연구원 등)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속을, 별도의 소속이 없는 경우 학위 여부를 표시한다.

국문초록은 , 으로 구분하고, 영문초록은 / 으로 구분한다.

② 교수 및 변호사 : *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변호사

*Professor, College of Law, Ewha Womans University / Attorney at Law

③ 미국 변호사 : *뉴욕주 변호사 / *Attorney at Law

* 국문초록에는 주까지, 영문초록에는 Attorney at Law로 기재한다.

④ 주저자, 교신저자 : *주저자,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과정

**교신저자,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* 주저자,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구분하여 기재한다. 영문초록의 경우 First author, Corresponding author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⑤ 사사 : *이 논문은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임.

*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scholarship of 2021.

* 사사는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에 모두 기재한다.

3. 제출방법 및 원고분량

- 1) 원고는 아래아 한글 또는 MS워드 작성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.
- 2) 원고 분량은 A4용지를 기준으로 20-30매를 원칙으로 한다(휴먼명조체 11포인트, 줄간격 160%).